이천시 회의실 사용 규정

소관부서: 자치행정과

제정 1996 · 3 · 1 훈령 제 15호 개정 1999 · 2 · 26 훈령 제 92호 개정 2007 · 7 · 2 훈령 제177호 일부개정 2021 · 12 · 23 훈령 제303호 전부개정 2022 · 4 · 29 훈령 제309호 일부개정 2023 · 3 · 6 훈령 제315호 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일부개정 2024 · 7 · 1 훈령 제328호 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회의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과 적절한 회의실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회의실에 대하여 적용한다. 〈개정 2023·3· 6, 2024·7·1〉
 - 1. 이천시청 내 대회의실(소통큰마당) 및 중회의실(창의마당)
 - 2. 국·소·담당관(차량등록사업소 포함) 및 읍·면·동 회의실
- **제3조(사용관리)** 회의실 사용관리의 책임자(이하 "관리 책임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 〈개정 2023·3·6, 2024·7·1〉
 - 1. 이천시청 내 대회의실(소통큰마당) 및 중회의실(창의마당) : 자치행정업무 담당부서장. 다만, 방송·조명·영상시설·무대 기계설비 운영 및 회의실 비품 관리는 해당 재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 - 2. 국·소·담당관(차량등록사업소 포함) 회의실 : 주무 부서장 또는 부서장
 - 3. 읍·면·동 회의실(방송, 영상, 비품 등 포함) : 읍·면·동장
- 제4조(사용자) ① 회의실은 이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속 직원이 공무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공공기관, 사회단체 등(이하 "단체 등"이라 한다)은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

이천시 회의실 사용 규정

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.

- 1.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
- 2. 시의 업무를 단체 등에서 대행하는 행사
- 3. 그 밖에 이천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자는 회의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.
- 1. 시정추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2.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
- 3.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4. 「공직선거법」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
- 5. 특정 종교단체의 내부종교행사를 위한 경우
- 6. 단체 등의 내부행사를 위한 경우
- 7. 그 밖에 관리 책임자가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하는 경우
- 제5조(사용신청)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 소속 직원은 사용 5일 전까지 전자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책임자에게 회의실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. 다만, 전자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회의실의 경우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.
 - ②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사용 7일 전까지 별지서식에 따른 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행사 관련부서(이하 "관련부서"라 한다)에 제출하고, 관련부서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관리 책임자에게 사용신청 을 해야 한다.
- **제6조(사용승인여부 결정통지)** 제5조에 따른 회의실 사용신청을 접수한 관리 책임자 는 예약일 전일까지 사용승인여부를 신청인과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7조(회의실 준비) 회의실 책상·의자 배열과 기타 소요설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
- 제8조(준수사항) ① 회의실 청결 관리는 청사관리업무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되, 사용 자는 회의실 사용 중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회의실 사용 시,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는 경우

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.

- ③ 사용자가 그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회의실 사용 준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관리 책임자가 사용중지를 지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9조(사용취소·중지) 관리 책임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.
 - 1.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사용승인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
 - 3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
부칙〈2022·4·29 훈령 제309호 전부개정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3·3·6 훈령 제315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③ 「이천시 회의실 사용 규정」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호 중 "체육지원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"를 각각 "차량등록사업소"로 한다.

부칙〈2024·7·1 훈령 제328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- ⑧ 「이천시 회의실 사용 규정」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호 중 "국·소·담당관(차량등록사업소 포함)"을 각각 "국·소·담당관"으로 한다.
- ⑨ 생략

[별지서식]

회의실 사용 신청서

신 청 인	단체명				전화번호		
	대표자 성 명				생년월일		
	주 소						
사 용 시 설 물	□ 대회의실(소통큰마당) □ 중회의실(창의마당) □ 기타 회의실						
사 용목 적 및 내용							
사용시간	년	월	일	시 부터	시까지	참석예정	
		(총	시간	분)		인원수	
추가사용 내 용	부속시설 및 장비	□ 음향시· □ 비디오 □ 기타(※사용시설	프로젝트	Ē ·경우에 한힘	' -)
「이천시 회의실 사용 규정」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.							
		ı	년	월 일			
신청인							인
이천시장 귀하							